

##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정	1981. 7. 1	조례 제 6호
개정	1984. 2. 21	조례 제 246호
	1985. 11. 11	조례 제 347호
	1988. 12. 1	조례 제 499호
	1989. 7. 8	조례 제 554호
	1990. 7. 30	조례 제 611호
	1990. 11. 24	조례 제 618호
	1991. 11. 30	조례 제 689호
	1993. 7. 16	조례 제 760호
	1995. 6. 14	조례 제 884호
	1997. 1. 15	조례 제 983호
	1998. 3. 9	조례 제1068호
	2003. 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4. 6. 25	조례 제1344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7. 10. 10	조례 제1552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3. 8. 1	조례 제193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7. 3. 12	조례 제2242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8. 30	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9. 9. 27	조례 제2519호
일부개정	2019. 12. 20	조례 제2560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광명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수입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(이하 “결정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전문개정 97. 1. 15]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03. 11. 18, 2010. 11. 25, 2013. 8. 1, 2014. 8. 14, 2018. 8. 30>

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

이 위촉한다. <개정 2003. 11. 18>

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⑤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3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 <개정 90. 11. 24, 95. 6. 14, 97. 1. 15, 98. 3. 9, 2007. 10. 10>

1.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
2.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
3.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
4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
5.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97. 1. 15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97. 1. 15>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고,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부한다. <개정 97. 1. 15, 2019. 9. 27>

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97. 1. 15>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. <개정 97. 1. 15, 후단삭제 2017. 3. 12>

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.

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

둔다. <개정 97. 1. 15>

②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97. 1. 15, 2003. 11. 18, 2004. 6. 25, 2019. 12. 20>

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. <개정 97. 1. 15>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수당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·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6, 2011. 8. 9>

[전문개정 97. 1. 15]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4. 2. 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5. 11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8. 12. 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7. 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0. 7. 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0. 11. 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1. 11. 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3. 7. 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5. 6. 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3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7. 10. 10 조례 제15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⑫ 부터 ⑲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④ 까지 생략

③⑤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③⑥ 부터 ⑦①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8. 1 조례 제193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①⑦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부터 ④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2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

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① 까지 생략

③②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㉓ 부터 ㉔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9. 27 조례 제251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2. 20 조례 제256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정책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⑦ 부터 ⑩ 까지 생략